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기획 예산과	1

( 2015. 1. 27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1월 12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회부일자 : 2015년 1월 16일(금)

###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제32조의10

### 5. 제출이유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2015.1.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보조사업의 공모대상과 보조금의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 점검 및 감독, 정산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등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6.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규정(안 제4조)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15명 이내 구성(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
- 라.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제20조)
- 마. 지방보조사업 점검 및 감독, 정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21조~제24조)
- 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26조)
  - 구청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을 성과평가 후 예산편성에 반영
  -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함
-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안 부칙)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부칙에 종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법률 규정,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2016년 회계부터 적용),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15명 이내로 구성(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편성 사항,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 보조사업자와 재원분담사항,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사항, 사업유지여부 결정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보조사업 공고, 신청자 결정, 교부조건과 교부방법에 관하여 규정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명령과 사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산검사와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 구청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을 성과평가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015. 1. 15일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마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적용해 오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따라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2014. 11. 20. ~ 12.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마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기본원칙 등을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지방보조금을 투명한 회계절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부적합한 용어나 불명확한 표현,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단체 지원업무의 안전과 단계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5년 사회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공익사업 관련 조례 제정 시 즉시 폐지하여 법률의 적용에 혼란이 없어야 하여야 할 것임.

# 관 계 법 규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759호, 2009.10.01, 일부개정, 조례 제1호, 1988.05.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1988.05. 1**
3. 금액선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0.1>

③ 제2항에 따른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자체부담)** ①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별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교부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기재한 교부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0.1>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통지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09.10.1>

③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연도 내에 사업완성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 <개정 2009.10.1>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09.10.1>

**제 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단체가 취소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 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4. 제12조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5.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